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급행철도 신규노선 기획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류시설 재난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헬기사고 지속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헬기 운항자격심사 수행 주체를 지방항공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11. ~ 1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를 “**광역급행철도건설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을 “**광역급행철도건설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정**”을 “**지정·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승인·고시**”를 “**승인·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사업관리**”를 “**사업관리 총괄·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민간투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자금 제조달 등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9.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운임에 관한 사항

10.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이용자 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 총사업비 협의 등에 관한 사항

12.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의 개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제3항에 제23호 및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4.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제33조제3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0.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제35조의2제4항에 제59호 및 제6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60.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 ①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별표 7 중 총계 “1,019”를 “1,022”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09”를 “1,012”로 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을 “3”으로,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3”을 “14”로, 철도경찰주사보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0”를 “11”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024”를 “1,027”로 하고, 일반직 계 “1,014”를 “1,017”로 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를 “3”으로,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4”를 “15”로, 철도경찰주사보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1”을 “12”로 한다.

별표 18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역급행철도기획과(준속기한: 2027년 11월 25일)

총계	5
일반직 계	5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시설주사 또는 행정주사	1

별표 1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교통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주택토지실 청년주거정책과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2) 철도국 광역급행철도 건설과	3명 (5급 1명, 6급 2명)	2025년 9월 30일까지
3) 모빌리티자동차국 도 심항공교통정책과	2명 (6급 1명, 7급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철도국) ① ~ ③ (생략)	제14조(철도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철도국에 철도정책과·철도 운영과·철도건설과·철도투자 개발과·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철도안전정책과·철도운행안 전과 및 철도시설안전과를 두 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 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 한다.	④ ----- ----- ----- <u>광역급행철도건설과</u> ----- ----- ----- -----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u>광역급행철도건설과장</u>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민간투자 수도권광역급행철 도 사업의 <u>시설사업 기본계획</u> 의 수립·시행	3. ----- ----- <u>실시계획 승인·변경</u> <u>에 관한 사항</u>
4. 민간투자 수도권광역급행철 도 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 시행자 <u>지정</u> 에 관한 사항	4. ----- ----- ----- <u>지정·변경</u>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실시계획 <u>승인·고시</u> 에 관한 사항	6. ----- ----- <u>승인·변경</u> ----- --

7.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건설 및 운영 단계의 <u>사업관 리</u> 에 관한 사항	7. ----- ----- <u>사업관 리 총괄·조정</u> ----- -----
<신 설>	8. <u>민간투자 수도권광역급행철 도 사업의 자금 재조달 등 사 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u>
<신 설>	9. <u>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운임에 관한 사항</u>
<신 설>	10. <u>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이용 자 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u>
<신 설>	11. <u>수도권광역철도사업 총사업 비 협의 등에 관한 사항</u>
<신 설>	12. <u>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의 개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신 설>	13. <u>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 건 설공사의 품질·안전 및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u>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 국) ①·② (생 략)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 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u>헬리콥터 분야 조종사 운항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u>

<신 설>	24. <u>헬리콥터 분야 조종사 운항 자격 위촉심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u>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 국) ① ~ ③ (생 략)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 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u>헬리콥터 분야 조종사 운항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u>
<신 설>	21. <u>헬리콥터 분야 조종사 운항 자격 위촉심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① ~ ③ (생 략)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58. (생 략)	1. ~ 58. (현행과 같음)
<신 설>	59. <u>헬리콥터 분야 조종사 운항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u>
<신 설>	60. <u>헬리콥터 분야 조종사 운항 자격 위촉심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u>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0조의4(광역급행철도기 획과)
	① 광역급행철도기 획과장은 부 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광역급행철도기 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 8과 같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7]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019	1,022	+3
·	·	·	
·	·	·	
일반직 계	1,009	1,012	+3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	3	+1
·	·	·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3	14	+1
·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	10	11	+1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			
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24</u>	<u>1,027</u>	+3
·	·	·	
·	·	·	
일반직 계	<u>1,014</u>	<u>1,017</u>	+3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u>2</u>	<u>3</u>	+1
·	·	·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u>14</u>	<u>15</u>	+1
·			
철도경찰주사보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u>11</u>	<u>12</u>	+1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	--	--	--